



제426회국회(정기회)
제2차 행정안전위원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각급 선관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입후보 사직기한 연장〉
■ 채현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300호)

2025. 7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조 문 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채현일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5. 3. 24.
3. 회 부 일 : 2025. 3. 2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,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.

이에,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, 현행 “선거일 전 90일 또는 선거일 전 30일”로 규정되어 있는 사퇴시한을 “선거일 전 1년”으로 일괄 연장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<u>선거일 전 90일까지</u>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----- ----- -----선거일 전 90일(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1년)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</u>	2. <u>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</u>
3. ~ 9. (생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다만,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

1. ~ 4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<u>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본문에 따른다.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며, 이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은 선거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.

그런데,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의혹¹⁾, 선거 직무 관련 특정 정당과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²⁾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,

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신뢰도 회복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고,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, 현행 “선거일 전 90일 또는 선거일 전 30일”로

1) 조선일보(2025.3.4.), “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... 선관위, 부패 원팀이었다.”

2) 연합뉴스(2020.2.21.), “수사자료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... 2심도 해임 마땅”

규정되어 있는 사퇴시한을 “선거일 전 1년”으로 일괄 연장함으로써,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,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완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, 최근 여러 의혹으로 훼손된 선거관리 위원회의 대국민 신뢰성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일률적으로 사퇴시한을 “선거일 전 1년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, 해당 입후보 제한기간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공무원 등에 대한 입후보제한기간은 1994년 「공직선거부정방지법」 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, 당시 입후보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“90일”이었으나, 예외적으로 전국구국회의원선거(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) 및 보궐선거 등은 “후보자등록신청 전”³⁾으로 규정하였음.

이후 원칙상 입후보제한기간은 1998년 선거일 전 “90일”에서 “60일”로 완화되었다가 2010년 “90일”로 다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비례대표의원선거 등에 대한 입후보제한규정의 경우 2015년 법 개정으로 “후보자등록신청 전”에서 “선거일 전 30일”로 강화되었음.⁴⁾

3) 현행법에 의하면 “후보자의 등록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,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이루어짐(「공직선거법」 제49조제1항)

4) 한편, 현행과 같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유가 4가지로 확정된 것은 2000.2.16. 「공직선거부정방지법」 일부개정령으로 인한 것이며, 이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 2가지 사유만 제시되어 있었음

<입후보제한기간 규정 개정 연혁>

구분		1994년 (신설)	1998년 (개정)	2010년 (개정)	2015년 (개정)	현행	개정안
사직기한	원칙 (§53①)	90일	60일	90일			1년
	예외 (§53②)	후보자등록신청 전			30일		

일반 공무원은 “선거일 전 90일 또는 선거일 전 30일” 사퇴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에게만 “선거일 전 1년”이라는 사퇴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,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.

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시한을 180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⁵⁾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5)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기를 현저하게 앞당김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(피선거권)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정임으로,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, 그 수단의 적정성도 긍정되나,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,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경우 양자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.(헌법재판소 2003. 9. 25. 2003헌마106)

따라서,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 측면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공무담임권 침해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필요가 있을 것임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의 입법적 정당성,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의 직위·권한의 범위 및 성격을 고려할 필요성, 헌법상 입후보할 자유의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,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, 참정권,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의 범위,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336